



교육부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관련

가.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95호(2016.11.29.)

2. 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 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환수 기준을 마련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6.11.29.자로 공포되어 2016.11.30.자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외 5

주무관	기안11/29 김영호	서기관	검토11/30 안상훈	학술진흥과장	결재11/30 최인엽
-----	----------------	-----	----------------	--------	----------------

협조자

시행 학술진흥과-6137 (2016-11-30) 접수 16120110 (2016-12-01)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www.moe.go.kr

전화번호 044-203-6876 팩스번호 044-203-6875 / kimyh14@moe.go.kr / 공개